

대법원 2022. 3. 11 선고 2021다298676 판결 [사해행위 취소]

전 문

원고, 피상고인

대한민국

피고, 상고인

김AA

판 결 선 고

2022. 3. 11

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. 11. 3. 선고 2020나59390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「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.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